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.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3. 13) 상정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3. 13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국제통상과장 이 종 훈)

가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폐지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(2001. 8. 14)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운영 상위법 인용조문 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조정함(안 제4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법제44조의 내용은 무엇인지	○ 근로자 복지기본법으로서 민간위탁운영 근거를 명시한 내용임
○ 1년 6월동안 현재 조례의 근거가 없는데 지금 상정하는 이유는	○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현재 개정하여고 하는것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

설치·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3. 8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의안번호	제93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□ 제 안 이 유

-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폐지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(2001.8.14)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건을 조정하려는 것임

□ 주 요 골 자

- 민간위탁운영 상위법 인용조문중 “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”를 “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”로 조정함(안 제4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”를 “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탁운영)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</u>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탁운영) ----- ----- ----- <u>근로자</u> <u>복지기본법 제4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